

의안번호	2202318
의 퇴 인	정점식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5.
추계번호	24D2327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유·도선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3,100만원, 2029년 3억 5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7억 1,700만원(연평균 3억 4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국가 보조금 지급 (안 제36조제1항)	331	337	343	350	356	1,717	343

주: 1. 국가 보조금 지급(안 제36조제1항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2.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이 단절되거나 취약한 도서 등을 오가는 노선 등 적자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2023년 기준 적자의 36.4%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,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나머지 63.6%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적자를 모두 보전하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제1항(보조금의 지급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·도선의 안전운행과 공익적 기능 수행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1. 교통이 단절되거나 취약한 도서 또는 오지(奧地)를 오가는 노선 등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2. 영세 유·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3. 노후 유·도선장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※현행법에서는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6조제1항(보조금의 지급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가가 유·도선의 안전운항과 공익적 기능 수행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예상
 - 현행법에서는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후선박 교체 등에는 보조금 지급 사례가 없음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 기준)

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5.1%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적자노선 선박 수를 매년 5척이고 선박당 평균 적자의 63.6%를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적자노선 선박 수는 5척이고, 선박당 평균 적자는 9,9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은 36.4%
 - 2023년 기준 적자노선 5척의 적자는 총 4억 9,600만원으로 선박당 평균 적자는 9,900만원
 -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액은 1억 8,000만원으로 보조율은 36.4%
 - 선박당 평균 적자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하고,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나머지 63.6%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적자를 모두 보전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국가가 유·도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3,100만원, 2029년 3억 5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7억 1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척,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보조금 지급 대상 선박 수(A)	5	5	5	5	5	—
선박당 평균 적자(B)	104	106	108	110	112	—
추가재정소요(=A×B×63.6%)	331	337	343	350	356	1,717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적자노선 선박 수, 보조율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